

일반물류단지 또는 첨단물류단지 안의 토지에 관한 자료

[illegible]

비고

1. 작성 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(매년 6월 1일) 현재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 또는 같은 법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 안의 토지로서 같은 법 제2조제7호·제8호 각 목의 시설에 사용되는 모든 토지입니다.
2. "용도"란 중 "물류단지시설"란 작성 시 토지의 지정용도가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용도(대규모점포, 공동집배송센터 등)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.
3. "용도"란 중 "지원시설"란 작성 시 토지의 지정용도가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용도(정보처리, 금융·보험·의료·교육시설 등)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.